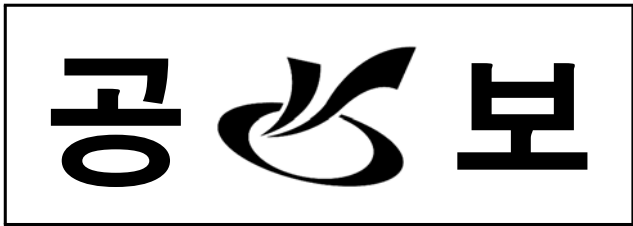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 670호
2008년 12월 8일 월요일

차 례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1041호 유기동물처리 민간위탁시설 선정 공고(안)	3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1042호 공장등록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5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1043호 공장설립승인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8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1044호 공장등록취소에 따른 청문 실시 공시송달 공고	10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1047호 폐기공인 공고	13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1052호 공시송달공고	15

회							
람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1053호 공시송달공고	16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1055호 부동산거래신고위반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공고	18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1061호 공시송달공고	20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1062호 압류 자동차 매각 공매 공고	23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1072호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8

공 고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1041호

유기동물처리 민간위탁시설 선정 공고(안)

동물보호법 제6조에 의거 서구 관내 방견 및 유기동물처리를 위탁 운영할 민간보호시설을 선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12월 1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1. 유기동물처리 민간위탁시설 선정 개요**

- 처리대상 : 동물보호법 제2조에 규정한 동물 중 유기된 동물
- 대상지역 : 서구 전지역
- 민간위탁시설의 업무내용
 - 유기동물포획 및 상습피해지역 예찰활동
 - 보호시설 운영 및 보호기간 동안 관리조치
 - 치료가능한 질병은 치료
 - 사후처리(분양, 기증, 안락사) 및 사체처리(폐기물관련법에 적법한 절차)

2. 계약기간 : 2009. 1. 1 ~ 2010. 12. 31(2년간)

※ 계약을 성실히 수행할 경우 위탁 연장가능

3. 민간위탁시설 계약방법 :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평가·선정후 협약 체결**4.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기간 : 2008. 12. 1.(월) ~ 12. 10.(수) 17:00까지 접수
- 신청방법 : 서구청 별관3층 지역경제과 방문 접수(☎560-4454)
- 구비서류
 - 민간위탁 신청서 1부.

- 보호시설 내역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 사업계획서 1부.
 - => 사업계획서에 시설 내부 및 포획전담인력과 장비의 보유여부를 상세히 기재 하고 시설 및 포획장비 사진을 첨부할 것.
 - => 야간유기동물 발생신고에 대한 처리계획에 대해 상세히 기재할 것.
- 보호소 토지 및 건물사용 계약서 사본 및 건축물대장 각 1부.
- 동물병원 진료 위탁 계약서 사본 1부. (신청자가 동물병원인 경우 제외)
- 관리 직원(포획전담인력 및 관리수의사 포함) 고용 계약서 사본 1부.
- 포획 전용차량 차량등록증 사본 1부.

5. 선정방법

- 포획 및 관리인원, 포획 및 운송장비, 보호시설내역, 사후처리방안, 야간 신고 처리계획에 대한 서류검토와 사업계획 설명(신청자 본인)으로 평가 표에 의한 평가후 선정

6. 참가업체 자격조건

- 유기동물보호시설과 전담인력을 갖춘 동물병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하는 동물보호소
- 축산 또는 수의학과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동물보호단체
- ※ 동물보호소 및 동물보호단체의 경우 수의사가 상주하거나 축탁되어야 함.
- ※ 기타 법률(건축법 등)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시설

7. 기타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 배제 및 취소됩니다.
- 신청자는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서구 지역경제과(☎032-560-44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1042호

공장등록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공장등록업체중 공장을 폐쇄한 업체에 대하여 공장등록을 취소코자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청문을 실시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 동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등)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공장의 등록취소) 규정에 의거 공장등록을 취소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일

인천광역시서구검단출장소장

1. 처분의 제목 : 공장등록취소
2. 처분당사자 : 관내 21개 업체(붙임참조)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공장폐쇄
4. 법적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등)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공장의 등록취소)
5. 처분일자 : 2008.12.02
6. 고지사항

동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행정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인천광역시시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처분의 문의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출장소 기업지원팀
담당자 김성근(☎032-560-3237)
8. 공고기간 : 2008.12.02~12.18(17일간)
9. 공고장소 : 구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10. 붙임 : 공장등록취소업체 명단 1부. 끝.

2008년 공장등록취소 대상업체 명단

연번	공장등록번호	회사명	대표지명	공장대표주소
1	5720	동우ENC	조명순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155번지
2	검출-155	(주)모터텍엘리베이터	김경숙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215-7번지
3	검출-102	(주)에스피데이터	채수일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278-5번지
4	5038	(주)신한빛	김명성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677-10번지
5	검출-118	(주)인프라포커스	김하영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500-8번지
6	검출-114	샤인퍼니처	고표순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765-8번지
7	5295	(주)케이엠이엔지	오병용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591번지
8	검출-46	대흥섬유	김정석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660-2번지
9	5320	성원기계	이진복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산 143번지
10	5409	코리아주차설비(주)	박관규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391-3번지
11	검출-30	우정산업	박익경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632-5번지 외 1 필지
12	4879	성원산업	박경임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7-3번지
13	4554	메드라인	이재창	인천광역시 서구 불노동 714-1번지 외 1 필지
14	4197	(주)대호엔지니어링	손주호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351-4번지
15	검출-94	대보철탑(주)	신동선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362-12번지
16	3205	(주)평산	신수균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34-106번지
17	5397	동성산업	고동범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7-1번지 외 2 필지
18	5428	(주)극동엘리베이터	장경동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101-11번지 외 1 필지
19	4060	백제정공	김현숙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204-6번지
20	검출-117	(주)한중강건	이준호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43번지
21	검출-242	(주)한일에스텍	민동숙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592-14번지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1043호

공장설립승인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공장설립승인업체중 완료신고를 미이행 하거나 공장을 폐쇄한 업체에 대하여 공장설립승인을 취소코자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청문을 실시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 동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공장설립등의 승인취소의 예외) 규정에 의거 공장설립승인을 취소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일

인천광역시서구검단출장소장

1. 처분의 제목 : 공장설립등의 승인취소
2. 처분당사자 : 관내 4개 업체

연번	공장설립승인번호	회사명	대표자명	공장대표주소
1	98-3-6	금해농산	김경삼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10-202
2	98-1-20	인영공업	김인영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34-101
3	99-3-7	(주)은성	박수영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34-122
4	2003-1-9	현주강건	이현주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산90번지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완료신고 미이행 및 공장폐쇄
4. 법적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공장설립등의 승인취소의 예외)
5. 처분일자 : 2008.12.02

6. 고지사항

동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행정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인천광역시시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처분의 문의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출장소 기업지원팀

담당자 김성근(☎032-560-3237)

8. 공고기간 : 2008.12.02~12.18(17일간)**9. 공고장소 : 구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끝.**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1044호

공장등록취소에 따른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장등록을 득한 업체에서 공장을 폐쇄한 것으로 간주되어 동법 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등)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공장의 등록취소)규정에 의거 공장등록을 취소코자 함에 있어, 동 처분에 대한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청문실시 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일

인천광역시서구검단출장소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공장등록취소
2. 당사자

연번	공장등록번호	회사명	대표자명	공장대표주소
1	5335	(주)우성엔지니어링	우현구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13-7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공장폐쇄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공장등록의 취소
5. 법적근거 및 내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공장의 등록취소등)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공장의 등록취소)

6. 청문실시

가. 청문기관명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출장소 / 기업지원팀 / 담당자 김성근

나. 기 관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665

☎ 032-560-3237 / FAX 032-560-3247

다. 청 문 일 시 : 2008.12.29(월) 09:00~18:00 (8시간)

라. 청문장소 : 인천광역시서구검단출장소

마. 청문주제자 : 인천광역시서구검단출장소 총무팀장 최재영

바. 청문시 유의사항

- ①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붙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②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③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④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032-560-3237 담당자 :김성근)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7. 공고기간 : 2008.12.02~2008.12.18 (17일간)

8. 공고장소 : 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9.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청문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동 행정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장등록을 취소할 예정입니다.

10. 붙임

가) 의견제출서 1부. 끝.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처분의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검단출장소장 귀하

-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12-14111민

210mm×297mm

97.10.20 승인

(일반용지 60g/m²)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1047 호

폐기공인 공고

인천광역시서구공인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한 공인 을 인천광역시서구공인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폐 기 사 유 :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2. 폐기 년월일 : 2008. 12.
3. 폐기공인명 및 인영 : “불임참조”

폐 기 공 인 인 영

공 인 명	규 격(㎝)	공인인영	비 고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무인민원발급기전용1	2.3×2.3		전자공인으로 대 체
	- 이 하	여 백-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1052호

공 시 송 달 공 고

- 공 고 대 상 : 이수복 외11명
- 주소 또는 거소 : 붙임 내역 참조
- 공 고 내 용 :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 부동산압류통지
- 공 고 기 간 : 2008. 12. 03 ~ 2008. 12. 17(15일간)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지연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를 부과,
납부치 않아 부동산압류통지서를 귀하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이유로 반송이 되어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및 행정절차
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03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교통민원과(☎032-560-487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1053호

공 시 송 달 공 고

- 공 고 대 상 : 김명구외21명
- 주소 또는 거소 : 붙임 내역 참조
- 공 고 내 용 :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압류예고
- 공 고 기 간 : 2008. 12. 03 ~ 2008. 12. 17(15일간)

위 서류를 우편으로 귀하(사)에게 송달 하였으나 이사감,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재차 반송이 되어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2008년 12월 17일까지 인천광역시 서구청 교통민원과(☎032-560-4877)에서 고지서를 발부 받아 시중은행이나 농협 및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체납처분) 규정에 의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을 추심할 것을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03 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교통민원과(☎032-560-487, FAX032-560-486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시 송 달 내 역

[단위:원]

연번	납부자성명	채납금액	주소	비고
1	김명구	300,000	인천시 서구 가정동	폐문부재
2	장재귀	900,000	인천시 서구 가좌동	폐문부재
3	이규현	380,000	인천시 서구 심곡동	수취인불명
4	명광식	300,000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수취인불명
5	노진영	883,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폐문부재
6	김상경	30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폐문부재
7	김성환	61,000	인천시 계양구 임학동	폐문부재
8	김사빈	300,000	전라남도 여주시 소라면 사곡리	수취인부재
9	이강열	176,000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이사불명
10	양명철	965,00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주소불명
11	송영숙	315,000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폐문부재
12	장중용	20,000	인천시 서구 마전동 당하지구	폐문부재
13	김은성	1,542,000	인천시 부평구 심정동	폐문부재
14	박종현	53,000	인천광역시서구가좌동	폐문부재
15	윤영록	15,000	인천시 서구 경서동	수취인불명
16	박국열	800,000	인천시 남구 주안동	주소불명
17	박용태	15,000	전라남도 여주시 소호동	수취인불명
18	윤미혜	20,000	인천시 서구 당하동	수취인불명
19	고창환	21,000	인천시 서구 당하동	수취인불명
20	배선남	1,640,000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수취인불명
21	이양복	44,000	인천시 서구 마전동	폐문부재
22	정소영	900,000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 신정리	폐문부재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 - 1055호

부동산거래신고위반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 시 송 달 공 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1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예고통지문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오니 체납금액을 공고기간까지 시중은행 및 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제28조(체납처분)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의 규정에 의거 재산을 압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재산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12월 3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 공고기간 : 2008. 12. 3. ~ 2008. 12. 17. (15일간)

○ 공고내용

1. 통 지 내 용		부동산거래신고위반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2. 당 사 자	성 명	등록번호	주 소				체납액
	장미선	*****-*****	충남 공주시 1-22새뜸현대아파트 306-501				752,000
	이남철	*****-*****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1093-53				3,200,000
	이재양	*****-*****	서울 송파구 시천동 7번지 장미아파트 17동 603호				448,000
	정연균	*****-*****	부산 남구 대연동 631번지 7호				512,000
	임홍찬	*****-*****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중동 1178번지 미래마을 904동 505호				11,680,000
3. 위 반 사 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4. 법 적 근 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1조					
5. 기타(문의처)		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부서명	토지정보과	담당자	정준영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심곡동 244)				
		연락처	☎ 032-560-4827, FAX 032-560-4819				

○ 체납금액 납부방법

1. 계좌 입금(신한 100-023-055224 예금주:인천서구청 지적세외수입)
2. 서구청 토지정보과 방문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에 납부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106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성 명 : 신종원 외 57인

주소거소 : 별첨

공고내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부과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기간 : 2008. 12. 03 ~ 2008. 12. 17(15일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차량에 대하여 부과예고서를 우편으로 귀하에게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법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관련 증빙자료가 있는 대상자는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2008년 12월 17까지 인천광역시 서구청 교통민원과(☎032-560-4874, FAX032-560-486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한 내 의견제출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정된 과태료가 부과되며,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08년 12월 3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자동차의 무보험 부과에 고통보서민송분공시 송달내역

연번	접수번호	납부지명	주소	사유	호차	비고
1	00027194	신종원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17번지 35호 41동 4반 무궁화빌라 C동 301호	폐문부재	08-11-01 호차	무과예고
2	00027204	김성만의 1인(강석규)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94번지 17호 3층 15/1 301호	폐문부재	08-11-01 호차	무과예고
3	00027230	정명각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86번지 11호 30동 6반	폐문부재	08-11-01 호차	무과예고
4	00027231	최종철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173번지 22호 19동 3반	폐문부재	08-11-01 호차	무과예고
5	00027235	권희정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45번지 1동 5반 오리온연립 나동 206호	폐문부재	08-11-01 호차	무과예고
6	00027238	김상근외1인 안덕순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43번지 203호 4/2 대한빌라 2동 201호	폐문부재	08-11-01 호차	무과예고
7	00027292	심용운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4번지 2호 31동 3반 범양아파트 1동 205호	폐문부재	08-11-01 호차	무과예고
8	00027340	박영호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02번지 22호 31동 3반	폐문부재	08-11-01 호차	무과예고
9	00027343	고은정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83번지 6동 2반 한신아파트 106동 308호	폐문부재	08-11-01 호차	무과예고
10	00027350	신동일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587번지 8동 1반 동아아파트 114동 1802호	폐문부재	08-11-01 호차	무과예고
11	00027353	이복섭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13동 5반 엘지원당자이아파트 705동 104호	폐문부재	08-11-01 호차	무과예고
12	00027358	이명준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47번지 5호 27동 1반	폐문부재	08-11-01 호차	무과예고
13	00027361	엘림삼에스산업기계(주)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34번지 14호	수취인불명	08-11-01 호차	무과예고
14	00027374	이병주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312번지 2호 10동 1반 신명아파트 101동 301호	폐문부재	08-11-01 호차	무과예고
15	00027375	백광명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12번지 38동 1반 성일연립 2동 201호	폐문부재	08-11-01 호차	무과예고
16	00027384	사재식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727번지 1호 24동 7반 가이아상메르2차아파트 209동 501호	폐문부재	08-11-01 호차	무과예고
17	00027394	박흥서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20번지 33동 1반	수취인불명	08-11-01 호차	무과예고
18	00027414	정호영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65번지 5동 2반 대진아파트 301동 309호	폐문부재	08-11-01 호차	무과예고
19	00027422	이주열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537번지 2호 5동 5반 두솔 301호	폐문부재	08-11-01 호차	무과예고
20	00027423	정대식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37번지 10호 4동 2반 대성아트빌 C동 401호	폐문부재	08-11-01 호차	무과예고
21	00027438	김남균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51번지 34호 15동 4반	폐문부재	08-11-01 호차	무과예고
22	00027450	최유숙 공채면제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73번지 15호 16/6 거북빌라 나동 302호	폐문부재	08-11-01 호차	무과예고
23	00027466	여용복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42번지 23동 5반 우성정환빌라 A동 403호	폐문부재	08-11-01 호차	무과예고
24	00027471	이재영외1(정도영)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111번지 77호 4/1 문성하이츠 2동 401호	폐문부재	08-11-01 호차	무과예고
25	00027480	민순심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11동 1반 당하2차풍림아원아파트 101동 501호	폐문부재	08-11-01 호차	무과예고
26	00027502	변원섭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40번지 12호 52동 1반 정한빌라 C동 201호	폐문부재	08-11-01 호차	무과예고
27	00027530	EKMAYYIS MUTASIM YA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727번지 1호 가이아상메르아파트 201동 501호	폐문부재	08-11-01 호차	무과예고
28	00027562	박순애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820번지 1호 20동 3반 태평아파트 103동 1203호	폐문부재	08-11-01 호차	무과예고

29	00027574	손기표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04번지 15호 35동 1반 501호	폐문부재	08-11-01호차	무과예고
30	00027581	전찬도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66번지 12호 27동 4반 문화빌라 201호	폐문부재	08-11-01호차	무과예고
31	00027620	노희섭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56번지 10호 22동 2반 세명주택 301호	폐문부재	08-11-01호차	무과예고
32	00027628	(주)오성금속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2번지 10호	수취인불명	08-11-01호차	무과예고
33	00027640	김성만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94번지 17호 15동 1반 301호	폐문부재	08-11-01호차	무과예고
34	00027644	오승우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9동 1반 신안실코밸리아파트 511동 905호	폐문부재	08-11-01호차	무과예고
35	00027654	고인학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407번지 28동 2반 유영아파트 101동 709호	폐문부재	08-11-01호차	무과예고
36	00027664	채민병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44동 3반 대원레스파이어1차아파트 203동 1101호	폐문부재	08-11-01호차	무과예고
37	00027665	안월심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45번지 96호 19동 5반 보리연립 1동 303호	폐문부재	08-11-01호차	무과예고
38	00027668	장현금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87번지 102호 24동 2반	폐문부재	08-11-01호차	무과예고
39	00027669	최영환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번지 96호 8동 6반 성광아파트 나동 305호	수취인불명	08-11-01호차	무과예고
40	00027694	GANSUKH MUNKHNASAN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번지 203호	수취인불명	08-11-01호차	무과예고
41	00027705	김상열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151번지 13호 21동 1반	폐문부재	08-11-01호차	무과예고
42	00027708	김윤기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727번지 1호 24동 6반 가이아상베르2차아파트 207동 10	폐문부재	08-11-01호차	무과예고
43	00027710	문수경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536번지 4호 5동 5반	폐문부재	08-11-01호차	무과예고
44	00027740	김재덕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46번지 20동 6반 한신그랜드힐빌리지 40동 103호	폐문부재	08-11-01호차	무과예고
45	00027752	김병관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312번지 2호 11동 2반 퀸스타운 신명아파트 105동 1404	폐문부재	08-11-01호차	무과예고
46	00027759	성차용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493번지 4호 24동 4반 태양빌딩 501호	수취인불명	08-11-01호차	무과예고
47	00027760	이용진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15번지 18호 40동 3반 1층호	폐문부재	08-11-01호차	무과예고
48	00027771	강지현외임남분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133번지 3호 25/5 오성연립 가동 201호	폐문부재	08-11-01호차	무과예고
49	00027785	백민석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42번지 5호 7동 4반 칠성세스류 402호	폐문부재	08-11-01호차	무과예고
50	00027803	심희진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262번지 1호 18동 4반 신영아파트 다동 202호	폐문부재	08-11-01호차	무과예고
51	00027804	이수진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187번지 7호 9동 4반	폐문부재	08-11-01호차	무과예고
52	00027815	한재희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94번지 29호 15동 3반 청솔빌라 가동 301호	폐문부재	08-11-01호차	무과예고
53	00027818	(주)이원엘리베이터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683번지 5호 (4블럭6롯데)	수취인불명	08-11-01호차	무과예고
54	00027851	송순용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64번지 6동 2반 진흥아파트 나동 509호	폐문부재	08-11-01호차	무과예고
55	00027861	윤봉현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46번지 32호 26동 2반 송림빌라 204동 303호	폐문부재	08-11-01호차	무과예고
56	00027922	최관웅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동 211번지 18호 11동 4반	폐문부재	08-11-01호차	무과예고
57	00027923	이기훈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587번지 6동 1반 동아아파트 101동 1802호	폐문부재	08-11-01호차	무과예고
58	00027928	유만희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41번지 14호 28동 1반 하나아파트 201동 1501호	폐문부재	08-11-01호차	무과예고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1062호

압류 자동차 매각 공매 공고

지방세 등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자동차)을 지방세법 제82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부터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 처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매 공고 합니다.

2008년 12월 4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공매대상재산(자동차) : 붙임 목록 참조(4대)

2. 공매일정

가. 입찰 신청(등록) 및 보증금 납부기간

: 2008. 12. 04(목요일)12:00 ~ 2008. 12. 15(월요일)24:00(11일간)

나. 입찰참여 마감 : 2008. 12. 15(월요일) 24:00

※ 24:00 이후에 입찰보증금이 입금된 입찰자는 입찰권한을 부여하지 않음.

다. 입찰결과 발표

: 2008. 12. 16(화요일) 15:00 마감후 (주)오토마트 인터넷 공매사이트
(<http://www.automart.co.kr>)에 발표

3. 공매방법

가. 일반 전자상거래에 의한 경쟁입찰방식 적용

나. 공매장소 : (주)오토마트 인터넷 공매사이트

4. 입찰참가 및 등록방법

가. 인터넷을 통하여 입찰에 참가하되 입찰등록시 개인정보 입력 및 비밀번호 부여로 본인만 신청가능하며, 입찰신청후 [입찰참여]에서 입찰가를 반드시 등록해야만 입찰이 완료됩니다.

나. 선택차량에 대한 입찰권한은 아래 계좌에 입찰보증금을 입찰가액의 10/100 이상 입금해야 부여되며, 입찰기한내 미입금 또는 타인명의 입금시 입찰참가 자격을 취소합니다.

※ 입금계좌번호 : 신한은행 100-024-703909 인천서구청(세무과)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시 지정된 환불계좌로 이자없이 매각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공휴일이면 익일)에 환불됩니다.

라.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전환되므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마. LPG자동차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의 2의 규정에 열거한 자에 한하여 취득이 가능하므로 입찰시 반드시 취득가능한 자 명의로 입찰하여야 하며, 자동차 인도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자동차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의4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9 규정에 따른 의무이행기간(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있음을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자 및 낙찰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매각결정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면 공매와 관련된 미성년자의 모든 행위는 취소됩니다(제출서류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5. 낙찰자 결정기준

가. 입찰가격이 매각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입찰자(단독입찰 가능)

나. 최고가 입찰자가 2인 이상 있을 경우 입찰가의 선 제출자

다. 체납자 등 국세징수법 제66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제한된 자가 아닌 자

6. 매수대금 납부기한 :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가. 매수대금 납부기한까지 대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1회의 최고 절차를 거쳐 우리 시에 귀속되며, 해당차량은 재공매 조치합니다.

나. 매수대금 입금계좌는 입찰보증금 입금계좌와 동일하며 낙찰자 명의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7. 매각예정가격 : 감정에 의해 결정된 당해 회차 공매최저가격

8. 공매중지 및 매각결정의 취소

가. 공매진행중 또는 낙찰완료된 물건에 대하여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체납된 지방세 및 체납처분비 등을 은행 등에 완납한 사실이 추후에 확인되고 배분계산서 작성전 자동차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

나. 매수대금(잔금)을 납부 최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9. 공매물건의 인도절차 및 권리이전 비용

가. 매수대금 납부후 우리 시(공매 담당자)에게 공매물건 이전 등록지를 통보 하고 납부일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며, 그 권리이전에 따른 제비용은 낙찰자의 부담입니다.

나. 낙찰받은 자동차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설정한 압류등록 이외의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의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세 등 또한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 정기검사를 경과한 자동차를 낙찰 받은 경우 소유권 이전등록일부터 15일내 검사를 받는 등 정기검사 또는 정밀검사 해당 여부를 필히 확인 후 조치하여야 합니다.

라. 공매물건은 소유권 이전등록 후 자동차등록원부 등 관계서류를 지참하고 자동차보관소에서 인도되며, 운반과 그 운반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10. 공매물건의 하자책임 및 위험부담의 이전시기 등

가. 공매물건에 대한 제3자의 권리침해, 공부상의 하자나 행정상의 규제, 규격, 품질, 수량 등의 상이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자동차 점검서의 내용에 불구하고 입찰자의 책임아래 각종 공부확인 및 자동차보관소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직접 물건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자동차 점검서는 자동차 상태 및 중고차 시세 등을 감안하여 (주)오토마트에서 작성하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차령 10년 초과하는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점검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매수대금 납부 후 그 매각물건에 생긴 소실, 훼손, 도난, 기능상 이상유무 등 위험은 그 물건의 이전등록 여부, 현실의 인도유무에 불구하고 낙찰자의 부담이므로 매수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완납한 때에는 즉시 인수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공매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나. 공매물건 점검과정에서 자동차 급발진 등 예측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안전조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동차 보관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2동 642-2 한진중공업 제2보세창고내 오토마트(주) 인천보관소(☎032)578-0442)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서구청 세무과 체납정리팀 차량공매 담당자(☎032)560-4245, FAX032)560-494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월 공매공고대상자동차내역

2008년 12월

(단위:원)

연번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차량번호	공매재산예정가격	권리행사기간	인수날짜
1	(주)유성건설기		인천 서구 경서동 350-21	08누6108	8,100,000	2008.12.15까지	2008.10.14
2	(주)송산풍기		인천 서구 경서동 345-1	03거9986	9,000,000	2008.12.15까지	2008.11.28
3	박영구		인천 서구 석남동 489-10 진명빌라 가/101호	인천35머9941	270,000	2008.12.15까지	2008.10.13
4	고현주		인천 계양구 효성동 301-1 뉴서울(아) 601/1004호	인천34머4969	1,500,000	2008.12.15까지	2008.11.1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1072호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8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용자협약은행을 기업체의 거래은행을 감안하여 구금고 1개 금융기관에서 여러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고,
-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조항 인용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자지원에 관한 협약은행을 구금고에서 시중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제3호 중 “구금고”를 “용자지원을 위하여 구청장과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08. 12. 30(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지역경

제과장 ,우편번호 404-701,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번지. Fax 032-566-9898】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 성명 (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 기타 참고사항

-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등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 (☎) 032-560-4445로 문의 바랍니다.

자치법규 정비안 요약서

자 치 법 규 명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이 유	○ <u>용자협약은행을</u> 기업체의 거래은행을 감안하여 구금고 1개 금융기관에서 <u>여러 금융기관으로</u> 확대하고, ○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u>법조항 인용사항을</u> 정비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용자지원에 관한 협약은행을 구금고에서 시중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제3호 중 “구금고”를 “용자지원을 위하여 구청장과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으로 함.
개 정 안	“별 지 참 조”
신·구조문대비표	“별 지 참 조”
관계법령발췌	“별 지 참 조”
관련사업계획	“해 당 없 음”
예산수반사항	“해 당 없 음”
기타참고사항	“해 당 없 음”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2008-1072호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기금은 구청장과의 협약에 따라 지정된 구금고가 관리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융자지원을 위하여 구청장과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 이라 한다)의 저리용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제6조 각 호외의 부분 중 “각호의 1” 을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제5항·제7항,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제2항 중 “구금고” 를 각각 “금융기관” 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각호의 1” 을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구금고는” 을 각각 “금융기관은” 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구 재무회계규칙” 을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규칙」 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인천광역시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를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로, 상담지정란 중 "한미은행 지점"을 "지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용 자 신 청 서

공장등록번호 또는 공장등록확인번호		제 호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설 립 년 월 일			
소재지	본 사			전 화 번 호			
	공 장			용 자 신 청 액		백만원(원)	
전자우편주소 (E - m a i l)				담 보 종 류		보증서(), 부동산() 기타()	
업 종		(산업분류번호 :)		공 장 규 모		대지 m ² 건물 m ²	
생 산	주생산품 :				종 업 원	년도	
	년 도			인원			
자 본	계 (백만원)				수 출 (단 위 : 백 만 원)	년도	
	자기자본(백만원)			금액			
가점대상 해당사항 에 ○표	수출업체	유망중소 기업체	첨단산업체	해외단동산 업진출업체	KS및ISO인 증업체	수입대체 품생산업체	관광공예 품 중소기업 선정업체
	중소기업우수제품 마크인증업체	국내인증마크획득업체		100PPM품 질인증업체	공동브랜드 사업참여 업체	시지정유망중 소기업 선정업체	시지정특화 산업체
		NT KT EM GR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을 용자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실제용자금액은 은행의 최종
대출심사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은행용자상담확인필			공장등록확인필 또는 소기업확인필
상담지정	지정		
상담일자	년 월 일		
시, 군, 구 중소기업육성기 금대출여부	자금명 () 현잔액()백만원 ※해당사항 없을 경우 “없음”으로 기재		
용자추천금액	백만원		
담보의 종류 상담자	보증서()		직 성명 (인)
	부동산()		
	기 타()		
	직 성명 (인)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가점대상 업체의 입증서류 각 1부(수출실적 입증서류 최근 2년간 실적)

※ 은행용자상담 시 필요서류

1. 상기 2항 서류
2. 부동산담보 제공시 부동산등기부 등본 1부.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구청장과의 협약에 <u>의하여</u> 지정된 금융기관(이하 "구금고" 이라 한다)이 관리할 수 있다. ②~③(생략)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구청장과의 협약에 <u>따라</u> 지정된 구금고가 관리할 수 있다. ②~③(현행과 같음)
제5조(기금의 용도) ①(생략) 1~2.(생략) 3. <u>구금고</u> 의 저리용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4~5.(생략) ②~③(생략)	제5조(기금의 용도) ①(현행과 같음) 1~2.(현행과 같음) 3. <u>용자지원을 위하여 구청장과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 이라 한다)</u> 의 저리용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4~5.(현행과 같음) ②~③(현행과 같음)
제6조(용자대상업체) 기금의 용자대상업체는 구 관내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이 소재한 공장등록 또는 공장용도 사용확인을 필한 중소기업체로서 다음 <u>각호의 1</u> 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1~6.(생략) 7. <u>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u> 설립된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한 공동사업체 8~9.(생략)	제6조(용자대상업체) ----- ----- ----- ---- <u>각 호의 어느 하나</u> ---- ----. 1~6.(현행과 같음) 7. 「 <u>중소기업협동조합법</u> 」 ---- ----- 8~9.(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10조(용자조건) ①~③(생략) ④제3항의 저리용자에 따른 일반대출금리와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u>구금고</u>에 이자차액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제4항에 의한 이자차액보전에 관하여는 구청장과 <u>구금고</u>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⑥(생략) ⑦용자절차, 이자불입 또는 상환방법 등은 구청장과 <u>구금고</u>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제10조(용자조건) ①~③(현행과 같음) ④----- ----- <u>금융기관</u>----- -----. ⑤----- -----<u>금융기관</u>----- -----. ⑥(현행과 같음) ⑦----- -----<u>금융기관</u>----- -----.
제12조(용자금의 상환) ①~②(생략) ③구청장은 용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용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2.(생략)	제12조(용자금의 상환) ①~②(현행과 같음) ③----- --- <u>각 호의 어느 하나</u>----- ----- -----. 1~2.(현행과 같음)
제13조(변경사항통보) 용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기타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행하였을 때에는 이를 구청장과 <u>구금고</u>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변경사항통보) ----- ----- ----- -----<u>금융기관</u>----- -----.

현행	개정안
제14조(사후관리) 구청장과 <u>구금고</u> 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업체에 대하여 융자금의 관리실태조사와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사후관리) ----- <u>금융기관</u> ----- ----- ----- -----.
제15조(보고 등) ① <u>구금고</u> 는 용자상황,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u>구금고</u> 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u>구금고</u> 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보고 등) ① <u>금융기관</u> 은----- ----- -----. ②----- <u>금융기관</u> ----- ----- <u>금융기관</u> 은----- -----.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①(생략) ②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u>구 재무회계 규칙</u> 이 정하는 세입·세출의 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①(현행과 같음) ②----- -----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규칙」 ----- -----.
제17조(결산 및 보고) ①구청장은 <u>지방재정법</u> 제110조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생략)	제17조(결산 및 보고)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 ----- ----- ----- -----. ②(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